

## 수출금융에 있어서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소고 \*

오 원 석\*\*

한 기 문\*\*\*

- 
- I. 서 론
  - II. 수출매출채권과 채권의 양도
  - III. 수출채권의 준거법
  - IV. 수출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
  - V. 결 론
- 

주제어 : 채권양도, 양도효력, 팩토링, 포페이팅

### I. 서 론

국제금융거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금융거래와 달리 외국적요소 (foreign element)를 포함하므로 국제사법적인 논점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매출채권을 팩토링이나 포페이팅 방식의 기법

---

\* 본 논문은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년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문을 재정리 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주저자)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전임강사 (교신저자)

을 이용하여 금융유통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준거규정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팩토링과 포페이팅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하는 데, 대금결제 방법은 그 지급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그리고 외상방식(open account)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송금방식을 제외하고는 수출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금의 필요성이 생긴다.<sup>2)</sup> 이때 수출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수출금융이라고 하는데 수출금융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 중 물품제작을 위한 원료구입, 반제품구입 등을 위한 선적전금융(pre-shipment finance)과 완성된 물품을 선적후 수출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선적후 금융(post-shipment finance)으로 나뉜다. 선적후 금융은 신용장 방식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추심방식에서는 환어음 할인 그리고 외상방식에서는 송장할인방식<sup>3)</sup>으로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소구권부(with recourse)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편, 수출금융은 위험인수기능도 아울러 제공되어 지기도 하는데, 수출팩토링과 포페이팅이 대표적이다. 수출팩토링(이하 팩토링)은 외상거래방식하에서 수입자가 만기에 대금상환불능에 빠질 때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구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팩토링(factoring)은 대금결제조건이 외상거래방식일 때 외상거래에 따른 구매자의 신용위험을 금융기관이 인수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을 팩터라 한다. 즉, 팩터는 공급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인

1) 이 분류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Walter Baker and John 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 No. 694, 2008. pp. 17-34/ Gary Collyer,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3rd ed., 2007 pp. 22-23/ ICC, op. cit., pp. 149-167 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 대금결제방식의 분류도 이와 같은 4종류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2) 국제무역은 보통 1회의 거래액이 고액이며 장기의 계약이행 기간을 요하므로 수출입자가 자기의 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즉, 국제간 무역거래는 국내교역과 비교하여 매매계약, 제품제작, 인도, 수령 후 하자여부 확인 등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이행 그리고 사후관리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오늘날 국제무역거래는 외상거래(open account)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자는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서는 제품의 제작에서부터 대금회수 시점까지 소요되는 자금의 금융조달이 필요하게 된다.

3) 외국금융기관에서는 invoice discounting이란 이름으로 금융을 일컫는다.

수하고 필요에 따라 선급금융을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장래에 지급되어야 하는 매출채권에서 비롯되어, 아발(aval)<sup>4)</sup>이 추가된 어음(약속어음·환어음)이나 신용장(회환신용장·보증신용장), 독립보증(independent guarantee) 등에 의하여 추상화된 금전채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sup>5)</sup>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포페이터(forfaiter)라고 한다. 수출금융과 관련한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석광현(2004), 박세훈(2009), 한기문(2010)등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수출채권양도계약에 대해서는 미미하였다. 본고에서는, 수출자가 팩토링이나 포페이팅방식으로 팩터와 포페이터로부터 금융을 받고자 할때 각각 팩토링과 포페이팅 약정을 맺게 되는데, 약정의 당사자인 수출상과 팩터외 포페이터가 약정서내의 준거법에 관한 유의점과 이와 관련된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의 매매계약시 유의점을 역시 준거법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II. 수출매출채권과 채권의 양도

### 1. 매출채권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외상으로 물품의 매각, 용역의 제공등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한 대가를 ‘외화매출채권’이나 ‘받을어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법률이나 규정<sup>6)</sup>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대체로 외화표시금전채권 및 이러한 채권을 표창하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표창’이라함은 약속어음 환어음등과 같이 채권이 증서에 화체(化體)된 것 즉, 증서의 교부나 배서 및 교부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고 증서의 선의취득자는 원인거래에 기인한 항변으로부터 단절되

4) aval : 지급보증의 프랑스어이다. 이는 주로 수입자소재국의 은행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상에 ‘aval’ 이라 표시하여 어음상의 지급인(수입자)의 대금결제를 보증한다.

5) 허해관, “어음을 이용한 포페이팅의 법적 원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172.

6) 이틀외화표시채권이아어음은외국환거래법제조제1)항 제1호 1의‘외국환’에 해당한다.

는7) 등의 유통성이 보장된 것을 의미한다.8)

외국에서는 매출채권을 account receivable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그리고 동산저당증권(chattel paper)등을 수반하지 않는 채권을 의미한다.9)

여기에서는 팩토링과 포페이팅하에서의 매출채권의 양도를 다루므로 편의상 외화매출채권(Foreign receivables)을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도구인 송장(invoice)과 어음(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포함) 그리고 신용장거래하 개설은행은행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권리로 정의한다. 외화매출채권은 주로 은행을 통하여 할인되어 수출기업의 운전자금에 쓰이게 되는데 무소구로 진행될 때는 수출기업에게 부채로 계상이 되지 않아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만든다.10)

## 2. 채권양도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11)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외상공급이후 운전자금이 여의치 않을 때 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 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은 양수인과 신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

7) 어음법 제7조 및 제7조 : 환어음·또는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따라서 채권을 증명하는 수단인 문서에 불과한 예금증서 등은 채권을 표창하는 증거가 아니다.

9) 미국통일상법전 (UCO)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account receiv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106조에서 그 의미를 “any right to payment for goods sold or leased or for services rendered which is not evidenced by an instrument or chattel paper, whether or not it has been earned by performance”라고 정의하고 있다.

10) 기업이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무소구 방식으로 매각하여 채권을 현금화시키면 차입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재무건전성을 갖게 된다.

11)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다.

채권양도는 첫째,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채권의 매매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둘째,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sup>12)</sup> 셋째, 추심을 위하여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sup>13)</sup>

## 2) 채권양도행위의 법률적 성질

매출채권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이다.<sup>14)</sup> 또, 매출채권양도행위는 처분행위이지만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이다.<sup>15)</sup> 매출채권은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되기도 하지만, 매출채권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어<sup>16)</sup>, 지명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채권에 반영되는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가하여진다.

###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

매출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채권<sup>17)</sup>,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권리행사에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 채권,<sup>18)</sup>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

12) 즉, 채권의 양도담보를 뜻한다.

13)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추심의 기능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우선 추심기능만을 주는 채권양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채권양도는 아니다. 이 경우의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다만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기능을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양도인은 그 채권의 처분권을 잃지 않는다. 채권의 신탁적 양도는 채권의 추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p215).

14) 곽윤직, 상계서, p212.

15) 즉, 채권양도행위에는 물권행위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김형배, 전계서, p98).

16) 민법 제449조 제1항.

17) 예컨대,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18) 사용자주의 채권(민법 제610조), 임차권(민법 제629조), 사용자의 채권(민법 제657조) 등의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들 채권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곽윤직, 전계서, p217).

에 결제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 채권<sup>19)</sup> 등은 각각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잃든가 또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양도성이 제한된다.

다만, 팩토링과 포페이팅 거래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 (2)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제한

매출채권의 양도성은 채권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양도금지의 특약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의사표시는 채권이 발생할 때에 할 수도 있고, 발생 후에 할 수도 있다.

채권양도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이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sup>20)</sup> 그러므로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은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채권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선의의 양수인은<sup>21)</sup>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은 악의로 추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sup>22)</sup> 나아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sup>23)</sup> 실무상 금융기관인 팩터는 공급자와 채무자가 맺은 매매계약서를 참조할 것인바, 선의와 무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입증은 어려울 것이다.

이는 팩토링거래에서는 시사점이 있지만, 원인거래(underlying transaction)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포페이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연불조건의 수출이나 용역거래에 있어서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환어음

---

19) 예컨대, 상호계산(상법 제72조 이하)에 포함된 채권.

20) 민법 제449조 제2항.

21) 이때, 선의이면 족하나 아니면 선의 이외에 무과실도 필요하느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의 이외에 무과실도 요한다고 보는 제1설과 선의양수인에게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중과실이 있는 선의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제 2설이 대립되고 있다(김형배, 전게서, p829).

22) 곽윤직, 전게서, p219.

23) 대판 1996.6.28(96다18281), 대판 1999.2.12(98다49937).

이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함으로써 해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실히 이전하므로 별도로 해외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익자와 선의의 취득자(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원인거래의 하자로 지급을 해태할 수 없다.

### 3)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이전되며, 채무자는 채권양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sup>24)</sup>

####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의 승낙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인 승낙과는 다르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합의를 하였으나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에,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적용규정이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양도에 관한 주요 국제규범인 UNIDROIT의 국제팩토링협약<sup>25)</sup>, UNCITRAL의 국제채권양도협약<sup>26)</sup>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ICC)<sup>27)</sup>

24)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 또는 승낙의 주체와 상대방은 동일 하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그것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있다(김형배, 전거서, p870).

25) UNIDROIT(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in Rome, 사법 통일 국제연구소)는 국제연맹의 지원으로 이태리정부에 의해 1926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동 기구는 세계 각국간의 사법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으며, 특히 운송과 상법 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http://www.unidroit.org>, 2010. 12. 12). UNIDROIT의 국제팩토링협약의 원문은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1988.

26)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국제상거래 관련법에 대한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국제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국가의 관련 법률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UN총회에서 1966. 12. 17. 창설되었다. UNCITRAL의 국제채

그리고 미국의 제정법률인 UCC<sup>28)</sup>에 따르면 채무자는 선의의 신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sup>29)</sup>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sup>30)</sup>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채권의 이중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들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팩토링 채권의 채무자가 한국이외의 나라에 소재한다면 해당국의 법률과 대항요건의 구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는 위 (1)과 (2)는 원인거래와 부종적으로 작동되는 팩토링에는 시사점이 있지만 원인거래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포페이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음보증과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은 수출상과 수입상사이의 기초거래로부터 수입상이 일정한 항변권을 갖는 경우에 어음보증인/신용장개설은행이 어음소지인/혹은 선적서류를 무소구로 매입한 포페이팅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 이를테면 수출상과 수입상이 어음보증/신용장개설 이후에 그들간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되어 수입상이 수출상에 대하여 인적 항변사유를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포

---

권 양도양도협약의 원문은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2004.

27) UNIDROIT에서는 1994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은 전문과 7장 1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개정되었다.

28) Uniform Commercial Code, 즉, 미국의 통일상법전을 뜻한다.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UCC Art9, Secured Transactions에 잘 언급되어 있다.

29)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채무자 이외의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는 무제한설이 주장되었으나, 지금은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만을 가리키는 즉, 일정한 범위내의 제3자만을 의미한다는 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와 같다(김형배, 상계서, p834).

30) 김형배, 상계서, p834.



페이터가 그 계약해제의 사실을 모르고서 어음을 양수하거나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면 수입상과 어음보증인/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의의 양수인인 포페이터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sup>31)</sup>

이상 우리나라 민법과 주요 국제규칙간 채권양도효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표 - 1 〉 매매계약상 채권양도효력의 비교

구분 규범	양도효력요건	채권양도금지특약	제3자 대항력
UNIDROIT	양수인(팩터)도 통지 가능	부인됨. 그러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이 있음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름
UNCITRAL	양수인(팩터)도 통지 가능	부인됨. 그러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이 있음	양도인 소재지국가의 법에 따름
PICC	양수인(팩터)도 통지 가능	부인됨. 그러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이 있음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수령한 순서에 따라 변제를 하면 채무가 소멸됨
UCC	양수인(팩터)도 통지 가능	부인됨.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이 없음	등록을 하면 담보권의 열위에 있는 채무자(공급자)의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대항력을 가짐
민 법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함	긍정됨. 그러나 선의무과실 양수인은 보호됨	확정일자 받아둔 순서에 따름

31) 허해관, 전게서, p191 참조.

### 3. 당사자 관계

#### 1) 팩토링에 있어서의 당사자 관계

팩토링에서 팩터는 공급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서비스와 장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무소구권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와 같이 팩토링계약은 복합금융서비스제공계약이다. 다만 팩토링계약의 본질은 채권의 양도계약(contract of assignment)으로 주당사자인 공급자와 팩터의 관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당사자관계는 법제에 따라 채권적인<sup>32)</sup> 법률관계로 이해되거나, 채권적인 법률관계와 준물권적인 법률관계의 결합으로<sup>33)</sup> 이해되기도 한다.<sup>34)</sup>

팩토링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인 공급자는 팩터에게 자신의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급금융을 제공받는다. 공급자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합의한 범위내의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데, 이때 채권의 발생을 증빙할 서류 예컨대, 송장, 선하증권 사본<sup>35)</sup> 등을 팩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팩터는 일반적으로 팩토링계약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양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급자에게 약

---

32) UNCITRAL국제채권양도협약에서는 양도와 그 원인이 되는 매매, 담보, 증여 또는 지급을 구별한다. 국제채권양도협약에서는 ‘양도라 함은 채권의 양도 자체를 말하고’, ‘양도계약’이라 함은 채권매매 같은 원인행위를 말한다(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2002, p38).

33) 물권은 등기에 의한 공시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금액과 채권순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등기나 등록의 공시요건을 갖추게 되면 물권적인 효력을 갖는다.

34) 대부분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채권양도협약은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 자체와 인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로써의 양도계약의 구별을 인정한다. 즉, 협약은 양도와 그의 원인이 되는 매매, 담보, 증여 또는 지급을 구별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라 함은 채권의 양도매매를 말한다. ‘양도계약’이라 함은 채권매매와 같은 원인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이라 함은 원인행위가 아니라 준물권 행위를 지칭한다. 협약에서는 채권양도의 목적이 금융목적인지 장부기재를 위한 것인지, 추심,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보호, 위험관리,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의 목적을 불문한다. 왜냐하면, 금융 목적을 명시한다면 이는 금융 목적을 위한 양도에 대해서만 특별취급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법무부, 상계서, p38 참조).

35) 선하증권원본은 구매자인 수입자에게 바로 인도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선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사본을 팩터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대금을 지급하여 선급금융을 제공한다.<sup>36)</sup> 팩토링거래에서는 구매자(채무자)의 신용위험이 팩터에 의해서 인수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기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지급의사가 없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팩터의 소구로부터 자유롭다. 즉, 추심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팩터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급자로서는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며 공급자는 유효하지 않는 채권의 발생에 관해서는 담보책임(warranty)을 지지 않으면 아니된다.<sup>37)</sup>

## 2) 포페이팅에 있어서의 당사자 관계

포페이팅에서 포페이터는 (지급보증된) 어음이나 신용장을 해당 선적서류와 함께 이나 무소구권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와 같이 포페이팅 계약은 무소구부 할인을 제공한다. 포페이팅 계약의 본질은 채권의 양도계약(contract of assignment)이나 수입상과 수출상의 원인거래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페이팅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인 공급자는 포페이터에게 자신의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급금융을 제공받는다. 공급자는 보통 개별 매출채권을 포페이터에게 양도하는데 채권의 발생을 증빙하는 서류 예컨대, 송장, 선하증권 원본 등을 포페이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포페이터는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양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급자에게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대금을 지급하여 선급금융을 제공한다. 포페이팅에서는 구매자/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페이터에 의해서 인수되기 때문에 구매자/신용장개설은행이 파산, 기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지급의사가 없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포페이터의 소구로부터 자유롭다. 즉, 수출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포페이터가 부담하게 된다. 단, 공급자는 유효하지 않는 채권의 발생에 관해서는 담보책임(warranty)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

36) 즉, 상업위험(commercial risks)은 담보되지 않는다.

37) 이상은 FCI의 일반팩토링규칙상의 수입팩터와 수출팩터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제후팩토링상에서의 수입팩터에 대한 수출팩터의 의무는 단독팩토링의 수출팩터에 대한 양도인의 의무와 대체로 그 흐름을 같이한다. 즉, 단독팩토링상의 팩터와 공급자간의 관계는 FCI의 일반팩토링규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Ⅲ. 수출채권의 준거법

어음이나 신용장을 매개로 한 포페이팅거래와는 달리 팩토링거래는 수출자(채권자)가 그와 수입자(채무자) 사이의 기초계약상의 외상매출채권(금전채권)을 그와 팩터 사이의 팩토링계약에 따라 팩터에게 양도함으로써 금융을 제공받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하므로, 국제채권양도를 수반한다. 따라서 국제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가 된다. 이는 곧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 양 당사자의 수출계약서 (sales contract)상의 준거법을 의미한다.

#### 1. 팩토링거래상의 채권양도의 준거법

팩토링거래상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sup>38)</sup>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팩터) 사이의 양도계약(contract of assignment)관계가 그것이다. 이는 양도인인 공급자와 양수인인 팩터 사이의 팩토링계약관계이다. 둘째,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는바, 이는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다. 셋째, 당해 채권에 관하여 경합하는 복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문제되는바, 이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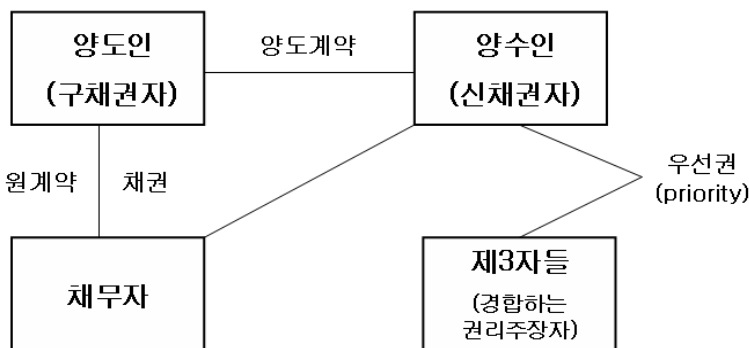
위와 같은 3가지의 법률문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되는 채권양도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바, 우리 국제사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채권양도의 준거법에 관하여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되,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우리 국제사법은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i)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관계와 (ii)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38)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4」, 박영사, 2007, pp39-41 참조.

39) 석광현, 상계서, pp39-41 참조.

〈 그림 - 1 〉 채권양도 당사자 관계



자료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4, p41.

따라서 팩토링거래에서 팩터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는 그 채권의 준거법 즉, 양도되는 당해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경합하는 복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도 그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팩토링거래에서 양도되는 채권은 수출자(공급자)와 수입자(채무자) 사이의 기초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이므로, 결국 그 채권의 준거법은 곧 기초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이다.

그리고 법정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는 우리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되는 주관적 준거법과 제26조에 따라 지정되는 객관적 준거법이 있다.

따라서 결국 기초계약상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지정된 계약(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관적 준거법이 그 채권양도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당사자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상의 추정규정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자)의 계약체결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매도인국법)이 최밀관련국법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매도인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으로서 그 채권양도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sup>40)</sup>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가 양도인(공급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채무자가 양수인(팩터)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을 가지는지, 채무자가 행한 급부가 채무자를 면책시키는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요부, 동일채권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에 누구에게 우선하는지의 문제는 위와 같은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sup>41)</sup>

## 2. 포페이팅 거래상의 채권양도의 준거법

포페이팅의 매개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음이나 신용장이다. 따라서 포페이팅 거래상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은 각 매개체에 따라 다른데 첫째,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 보증인과 피보증인(환어음 지급인, 약속어음 발행인)은 합동책임을 부담하므로 어음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어음보증인은 민법상의 보증인과는 달리 제네바 협약<sup>42)</sup>에 따라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으며<sup>43)</sup> 지급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달리 약정이 없다면, 어음보증인 소재지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둘째, 신용장이 매개체일 경우 지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달리 약정사항이 없다면<sup>44)</sup>,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신용장 확인은행 소재지국의 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 IV. 수출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

팩토링거래는 삼각관계 즉, 공급자(수출자)와 채무자(수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초계약관계와 공급자와 팩터사이의 팩토링계약관계 및 팩터와 채무자

---

40)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41) 석광현, 「국제사법」, 2003, p303.

42) 어음에 관한 국제협약, 우리나라의 어음법은 제네바협약을 따르고 있다.

43) 어음법제32조 제1항, 제77조 제3항

44) 실제 달리 약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이의 신채권자와 채무자관계로 구성된다. 팩토링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권양도으로서 이러한 채권양도의 맥락에서 그 채권의 채무자(수입자)에 대하여 공급자(수출자)는 양도인(구채권자)의 지위에 있고, 팩터는 양수인(신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포페이팅거래는 어음의 경우 수입자 소재지의 은행이 통상적으로 지급보증 (aval)을 하므로 지급보증은행은 신채무자가 되고 포페이터는 신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은 채무자의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팩토링/포페이팅거래는涉外적 요소 내지 외국적 요소를 가지므로 그 거래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sup>45)</sup>이 어느 법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국제사법 혹은 저촉법적 문제를 수반하는바 아래와 같이 논점을 살펴본다.

## 1. 주관적 준거법과 객관적 준거법

팩토링/포페이팅계약의 준거법으로는 주관적 준거법과<sup>46)</sup> 객관적 준거법으로<sup>47)</sup>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계약당사자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즉, 주관적 연결에 의하여 선택된 준거법을 말하며, 후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45)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등의 배경하에 제정된 고유한 자국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국제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복수의 국가가 관련 되는涉外적 법률문제에는 각기 다른 다수국의 법이나 국제관련법이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涉外적 법률문제에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涉外적 법률 문제에 적용가능한 여러 국가의 법들 중에서 선택되어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이라고 한다(배정환, “국제계약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p23.

46) 주관주의는 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주의, 즉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주의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약간의 주를 시발로 하여 다수국의 국제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주관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신창선, 「국제사법」 제6판, 도서출판 피데스, 2007, p254).

47) 객관주의는 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주의이다. 여기에는 계약체결지법주의, 계약이행지법주의, 채무자의 속인법주의 등이 있다(신창선, 전제서, 253면).

경우에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객관적 연결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을 말한다.<sup>48)</sup>

우리 국제사법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sup>49)</sup> 채택하고 있으므로,<sup>50)</sup>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있다면, 그것이 팩토링/포페이팅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준거법을 묵시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선택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 지는데,<sup>51)</sup> 이러한 제한이란 당해 계약내용과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선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52)</sup>

전통적 국제사법이론에 의하면 어느 국가의 법체계(national system of law)만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팩토링계약의 당사자가 예컨대, 한국법이나 영국법과 같이 특정한 국가의 법체계를 주관적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예컨대, UNIDROIT 팩토링협약이나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상인법(lex mercatoria, law merchant),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과 같이 어느 국가의 법체계에 속한 법률이 아닌 “국제적 법규”(international rules of law)를 주관적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sup>53)</sup>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다를

48) 주관적 준거법과 객관적 준거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지산, 2003)(이하 ‘석광현, 국제사법(2003)’으로 인용), pp200-203, pp211-215 참조.

49) 국제상사계약에서 당사자는 자신들의 계약에 적용될 법이나 법의 원칙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당사자자치의 원칙(doctrine of party autonomy)은 처음에는 학자들이나 국내 법원에서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것은 점차 모든 법계, 즉 영미법계, 대륙법계, 사회주의 법계 등의 각국의국제사법원칙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잘 확립되어 있다(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의 결정”,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41.

50) 한국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51)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2001), p91.

52) 한국 국제사법 제25조 :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객관적 준거법에 관하여서는 제26조 제1항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주관적 준거법을 규정하는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sup>54)</sup> 해석상 특정한 국가의 법체계가 아닌 “국제적 법규”를 주관적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최밀관련국법

객관적 준거법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상의 추정규정에 의하면, 팩토링/포페이팅계약은 금융서비스제공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인 팩터/포페이터가 계약체결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최밀관련국법으로 추정된다.<sup>55)</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 “특징적 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에 기초한 추정규정을 둔 것은 로마협약과 스위스 국제사법을 따라 법원과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함이다.<sup>56)</sup>

실무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팩터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준거법조항이 없다면 양도인과 팩터 동일한 나라, 특히 특징적 이행을 하는 팩터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기에 당연히 한국의 민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은 수출팩터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자격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팩토링의 순기능을 위하여서는 팩토

53) 석광현, 「국제사법」, 2003, pp202-203 참조.

54) 이에 대한 지적은 석광현, 「국제사법」, 2003, p203 참조.

55)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지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56) 석광현, 「국제사법」, 2003, p213.

링계약시 명시적으로 FCI (Factoring Chain International) 규칙 등을 준거규정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7)</sup>

한편, 우리나라의 팩터가 해외의 수출자를 위한 수입팩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 한국 국제사법에 비추어 본다면 수입팩터는 한국 수입자의 신용리스크를 담보이행하는 특징적 이행을 하므로 특징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게 된다. 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수입팩터(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채무자(우리나라의 수입자)의 채권양도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원채권자(해외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팩토링계약시 한국의 팩터가 단독수입팩터의 역할을 한다면 FCI 규칙<sup>58)</sup> 등을 준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포페이팅의 경우 신용장이나 어음이 금융의 매개체가 되므로 팩토링에서처럼 수입상(채무자)과의 채권에 대한 항변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포페이팅은 제3의 이해관계인과 이해 충돌이 생길 경우 새로운 채권 양수인과 채권의 우선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된 최밀관련국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 V. 결 론

팩토링과 포페이팅은 무소구 조건으로 은행이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수출기업에겐 회계상 부채로 계상이 되지도 않고 소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수출기업의 영업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실수요자인 수출기업들은 팩토링이나 포페이팅계약시의 준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명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국제채권양도계약에서 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

---

57) 우리나라 팩터들의 팩토링약정서를 보면 FCI규칙을 준거규정의 하나로 하고 있다.

58) 국제팩터들의 기구로서 International Factors Chain International(FCI), Hellors Group, Factors' Group(IFG), 등이 있는데 이중 FCI가 가장 크며 member들 간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팩터들은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정 준거규범을 준거규정내지 준거법으로 할 경우 이에 맞추어 분쟁을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지만 준거규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경우 준거법 지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국제사법은 외국적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경우(주관주의)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는 경우(객관주의)가 있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팩토링이나 포페이팅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준거법에 대한 언급이 각 계약서에 없을 때는 '최밀관련국' 원칙에 의거 특정적이행을 하는 팩터나 포페이터국의 소재지법이 법이 객관적 준거법으로 적용됨을 살펴보았다.

유의할 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팩토링과 포페이팅이 일어난다면 팩토링의 경우 채권의 양수인인 팩터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우리나라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팩터와 공급자는 팩토링계약시 FCI 규칙등을 준거규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포페이팅의 경우는 매개체인 어음과 신용장이 수출상과 수입상의 원인거래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한국의 민법을 적용 받지는 않을 것이나 현재 FCI 규칙처럼 국제적인 표준화된 포페이팅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발생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모범적인 포페이팅이 규칙이 제정되어 포페이팅 계약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형배, 「민법학강의3판」, 신조사, 2003.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 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2002.
- 사법연수원, 「국제사법과 민사소송」, 2008.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4」, 박영사, 2007.
- 신창선, 「국제사법 제6판」, 도서출판 피데스, 2007.
- 오원석·최준선·허해관,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 김재형, “유엔 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수용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 배정환, “국제계약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박세훈·한기문, “국제팩토링계약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석광현, “개정국제사법의 소개”,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의 결정”,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한기문 “국제팩토링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연구-수출금융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허해관, “어음을 이용한 포페이팅의 법적 원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Carole Murray et al.,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1th ed., Sweet & Maxwell (2007).
- Gary Collyer,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3rd ed., ICC (2007)
- Walter Baker and John 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 No. 694 (2008).

## ABSTRACT

### A Study on Governing Rule in Export Financing Related Account Receivable Assignment

Oh, Won Suk

Han, Ki Moon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forfaiting and factoring give a comfort to exporters as those special financing schemes are extended to them on a without recourse basis. This is good for the exporters in terms of financing and risk cover of buyer or LC issuing banks.

To enjoy this benefit, the SME exporters should, however,, know the risks involved in sales contract. For example, if the export and importer set Korean law as governing law in the sales contract especially for open account exports, the exporter's receivables might be not welcome by factors according to provisions of Korean Conflict Law and it's application. Those regulations tell that the factor's position would be unstable when the sales contract limit exporter's assignment of receivables to the factor when the sales contract is subject to Korean law. Also the exporters should know related regulation of importer which might affect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as well. This paper suggests the Korean exporters tak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greement/convention such as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Key Words : Governing Rule of Assignment of Receivables, Account Receivable Assignment Agreement, Export Receivables Financing